

각국의 안전 관계 법령

— 영국편 —

박 창 복

(위험관리정보센터 차장)

1. 영국의 법체계

가. 법의 특징

(1) 관례법 주의

영국은 지역의 관습을 기초로 재판소가 쌓아 온 관례에 의해서 법이 형성되어 온 나라이며, 의회가 정한 명문 법률이 있는 분야는 오히려 적다.

(2) 지역마다 다른 법체계

정식 국명은 Great Britain 및 북부 Ireland연합 왕국이지만, Great Britain은 더욱 이 England, Scotland, Wales의 3지역으로, 합계 4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지역은 원래 별도의 왕국이고 별개의 법체계를 갖고 있다. 이 중 Wales는 일찍부터 England에 정복된 관계로 현재는 England와 같은 법체계를 갖고 있으나, Scotland 및 북 Ireland 지방의 법체계는 England, Wales 지방과는 꽤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영국 의회에서 England, Wales나 Scotland 지방에만 적용범위를 한정된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 즉, 건조물 법(Building Act)은 England 및 Wales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Scotland에는 Scotland Building Act라는 별개의 법률이 적용된다.

본 내용에서는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England 및 Wales의 법을 대상으로 기술한다.

(3) 복잡한 법제도

법제도는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그 분야의 전문

가 외에는 현재 어떠한 법령이 유효한가 알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자세한 것은 교섭이나 계약에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아울러 영국에는 육법전서와 같은 것이 없고, 매년 그 해의 법률집이 나와 그 법률이 개정 혹은 폐지되어도 원래의 법률집은 변경되지 않는다.

또한, 오래된 법률이나 관례로 현재 효력을 지닌 것도 많고, 대헌장(大憲章, Magna Carta)이나 권리장전(權利章典)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외에, 화재나 폭발에 의해 인접지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가 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적인 관례인 라이란즈 對 프레차사건은 19세기의 관례인 것 등 옛부터 방대한 법률이나 관례를 조사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하다.

(4) 현장 행정관, 민간 기준 등에 광범위한 위임
안전방재에 관한 기준은 수치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등의 추상적인 표현이 보통이며, 실무상은 BS(British Standard) 등의 민간 기준이나 현장 행정관의 판단에 위임되는 범위가 넓다.

나. 영국 진출시에 필요한 인·허가사항

(1) 개발허가

공장 등의 건설시에는 1990년 도시 및 전원계획법(Town & Country Planning Act 1990)에 의해 지방의 토지이용계획담당관청(Local Plan-

ning Authority)에 개발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 담당관청은 아래와 같다.

* 大 London 지역 : 각 London Brough(특별시:32)와 City of London

* 大 London 이외의 England, Wales

• Non-Metropolitan Country Council

(현:47 통상 “shire”라 불림)

• District Council(町村:369)

• Parish Council(教區)

기업의 진출시는 이미 개발허가를 득한 용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로 개발허가부터 취득하는 예는 드물지만, 계획하고 있는 공장 등의 건설이 그 토지에 허가되어 있는 “開發”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축허가

공장 등의 건설시에는 건축확인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84년 Building Act에는 지방관청 또는 공인 검사사(Approved Inspecto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중 공인검사사는 현재 National House Building Council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방관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85년 건조물 규칙(Building Regulation)에는 지방관청의 승인 방식으로서

* 건축통지의 제출(Giving of Building Notice)

* 계획도서의 제출(Deposit of Plans)

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또한, 후술하는 화재인증(Fire Certificate)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도서의 제출에 의해야 하므로 공장, 오피스 빌딩, 백화점, 호텔 등의 경우는 모두 이 방법에 의한다.

(3) 착공통지, 완료통지

1985년 건조물 규칙에는 지방관청에 착공 48시간 전에 착공통지(Notice of Commencement), 완공 후 7일 이내 또한, 사용 개시전 7일 전까지 완료통지(Notice of Completion)해야 한다.

(4) 화재인증의 취득

1971년 화재방지법에 따라 화재인증이 필요한 건조물은 화재인증을 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공장, 오피스 빌딩, 백화점, 호텔 등은 모두 화재인증이 필요하다. 화재인증은 지방의 소방서에 신청한다.

2. 안전방재 규제의 개요

가. 방화·방폭에 관한 규제의 틀

(1) 방화·방폭에 관한 기본법

방화·방폭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의 다른 관점에서 규정하고, 각각에 기본이 되는 법률이 존재한다.

관 점	기 본 법
공중안전·위생의 관점	1971년 화재방지법 (Fire Precautions Act)
건조물 안전의 관점	1984년 건조물법 (Building Act)
직장 안전의 관점	1974년 직장 등 안전위생법 (Health & Safety at Work etc. Act)

(2) 화재방지법

1971년 화재방지법은 공중안전·위생의 관점에서 화재·폭발에 관한 모든 분야를 커버한다.

화재방지법은 1984년 건조물법과는 달리 영국 전역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화재방지법에서는 극히 소규모 건물을 제외하고, 화재인증의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화재인증이 불필요한 것은 건조물의 수용 인원이 20인 미만으로 반수 이상이 1층에 있는 경우임.

(가) 화재인증

화재인증에 있어서는

a. 해당 건조물의 사용 목적

b. 화재시 피난방법

c. 안전 또한 효과적으로 피난하기 위한 수단(연기 배출방법, 비상시 조명 등)

d. 소화설비의 타입, 수, 설치장소

e. 화재감지기의 타입, 수, 설치장소
f. 가연물·폭발물의 저장·사용방법(공장인 경우)이 반드시 기재되는 외에

g. 피난수단·피난로에 장애물을 두지 않기 위한 대책

h. 상기 c-e까지의 제 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i. 종업원의 방화·방폭훈련

j. 건물의 정원을 기재하는 것이 있고, 건조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는 화재인증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화재방지법 section 6.1, 6.2에서 규정).

(L) 화재인증의 발급

화재인증은 특수위험이 있는 공장(Health & Safety Executive가 소방서와 협의하여 발급)을 제외하고 소방서가 발급한다.

건조물의 점유자는 1976년 화재방지법 화재인증신청서규칙[Fire Precautions(Application for Certificate)] 소정의 신청서를 소방서에 제출한다.(화재방지법 section 5.1에서 규정)

(C) 소방서의 권한과 안전기준

화재인증 발급 후에도 소방서는 점검 결과, 화재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통지나 사용금지통지를 낼 수 있다.(화재방지법 section 10.2)

(3) 건조물법(Building Act)

1984년 건조물법은 England 및 Wales지역에서의 건조물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서 화재발생시 건조물 내에 있는 인간의 안전확보 관점에서 화재관련 규제를 하고 있다.

(A) 건조물법에 의한 화재·폭발에 관한 안전규제의 기구

1984년 건조물법은 이전의 규제와는 달리 성능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고, 법률이나 그 아래에 제정된 1985년 건조물 규칙(Building Regulation)에서는 건조물에 요구되는 안전성에 대하여 추상적인 내용만 실려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건조물 규칙하에 제정되어 있는 일련의 승인문헌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승인문

헌이 BS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L) 승인문헌에 의한 규제

건조물 규칙의 승인문헌 B에서는 방화문, 격벽(隔壁), 천장 등의 내화시간이나 건물과 인접지와 이격거리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규제의 개요는 원문의 총괄표 참조. 또한, 내화성능 기준이나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BS에 따른다.

(C) 피난방법 확보에 관한 강제규정에 의한 규제

피난방법 확보에 관한 강제규정(Mandatory Rules for Means of Escape in Case of Fire)은 승인문헌에 의한 규제와 다른 강행규정이다.

피난방법 확보에 관한 강행규정에는 화재시의 피난방법 확보에 관하여 BS 5588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4) 직장 등 안전위생법에 따른 규제

1974년 직장 등 안전위생법(Health & Safety at Work etc. Act, 이하 HSWA)에 따라 사용자는 종업원이 직무중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직장 등 안전위생법 2조)

이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에서 화재 안전확보의 의무도 진다.

(5) 방화·방폭에 관한 특별법

화재·폭발에 관한 위험이 일반 건조물과 크게 다른 건조물에 대해서는 특별 법률이나 규칙이 제정되어 위험성에 따른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A) 방화·방폭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분야

아래 분야에 대해서는 그 위험의 특수성에 비추어 특수한 법률 혹은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폭발물(다이나마이트, 니트로 그리세린, 실험탄 등)의 제조 또는 판매하는 건조물

1897년 및 1923년 폭발물법(1875, 1923 Explosives Act)에 의해 제조·판매면허가 필요하며, 면허신청시에 방화·방폭대책도 심사받는다.

* 석유저장 및 운반시설

1928년 석유법(1928 Petroleum(Consolidation) Act)에 의해 저장량이나 저장방법이 규제되어 있다.

* 액화석유가스 및 인화성이 강한 물질의 저장

시설

1972년 인화성물질 및 액화석유가스 규칙(1972 Highly Flammable Liquids and Liquids and Petroleum Gases)에서 저장방법에 대하여 규제.

나. 안전방재 규제의 운용실태와 진출시의 유의점

(1) 점검 및 행정지도의 실태

방화·방폭관련의 점검 실태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방관청의 점검 지도

1985년 건조물 규칙에 의해 건조물의 건축시에는 건축도서를 지방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그때 지방관청은 설계에 관하여 건조물 규칙의 기준만이 아니라 건조물의 외관 그외, 꽤 광범위한 범위의 세부 주문을 다는 경우가 있다. 그 지도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기 보다는 담당관(Planning Officer) 개인의 마을 건설에 관한 철학이나 신념에 따라 개인차가 크다는 것이다.

(나) 소방서의 점검 행정지도

건조물은 준공 단계에서 소방서가 점검하여 화재인증이 발급되고, 그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

화재방지법에는 필요한 방화·방폭설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가 법률상 요구되는 설비가 크다. 그러므로 담당관의 권한은 실제로 매우 강하다.

(2) 법률상의 요구사항과 실무상의 운용

필요한 방화·방폭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법률, 정령(政令)인 규칙(Regulation), 칙령(勅令, Order)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장 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설비가 크게 좌우되는 구조이다.

(가) British Standard

우리는 어떤 건축물에 어떠한 방화·방폭대책이 필요한가는 소방법을 위시한 법률 등을 보면 대개 알 수 있으나, 영국에서는 상기의 이유로 법령을 읽어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실무상은 BS를 위시한 민간 규격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BS 중에도 CO₂ 소화설비나 할로젠 화합물 소화설비에 관한 규정(BS 5306)과 같이 설비 규격에 관한 규정은 있어도 어떠한 경우에 그 설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소방서, 보험회사 그 외 공적기관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는 규정 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 BS만으로 전부가 커버되지는 않는다.

(나) 공적기관의 지침서

BS는 기계 사양이나 재질 검사방법 등 기술적인 부분의 상세 규정이 많아, 그 분야의 전문가 외에는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공적기관이 실무자가 쓰기 쉽도록 지침서 형태로 각종 규정을 정리하여 출간하는 경우가 있다.

(다) 민간단체의 기준, 지침서

BS 외에도 업체단체 등이 독자 기준을 제정하여 지침서를 발행하기도 한다. 그 중에는 보험회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단체인 LPC(Loss Prevention Council)가 만드는 기준은 각종 법률이나 규칙이 인명 구조를 목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과는 달리 인명구조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규제 내용은 법령이나 규칙으로 요구하는 것보다도 엄한 것이 많으며, 어떤 건설회사는 건조물 규칙으로 정한 Class 0(예를 들면, 석고보드, Concrete block 등은 Class 0에 해당한다. 상세한 것은 BS 476 part6, 7에 정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결정) 규격보다도 더욱 엄격한 규격의 벽재를 사용할 것을 보험회사로부터 제안되는 것이 있다.(LPC 개요와 중요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원문 자료 참조) ㉞

참고 : 본 내용 중의 원문 참조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협회 위법관리정보센터(T : 780-4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